

② 조례안 : 시장이 발의하여 차기 시의회에 이송할 조례안

조례안

[안건번호 제00호]

기획조정실 소관 안건번호 제00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안건번호 제00호 「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○ 외국지방정부 및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교류·협력 증진을 위하여 운용중인 “대외협력기금”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,

○ 기금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

내용입니다.

→ 조례안 제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짧고 간결하게 작성

-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-